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이버 공중협박죄 신설 등〉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5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이버 공중협박죄 신설(안 제70조의3 신설)	3
2. 공중협박 정보의 유통금지(안 제44조의11 신설 등)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6. 12.

다. 회 부 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파급력이 보다 크고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2023년 서울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다수 게시되어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 인력의 반복적인 투입 등 공적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되었음.

특히 모방 범죄 예고로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나, 낮은 경각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

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이버 공중협박죄 신설(안 제70조의3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0조의3 제1항).
-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제2항).
- 위의 두 죄의 미수범은 처벌함(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0조의3(벌칙) ①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u>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다. 검토사항

- 2023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공장소에서의 흥기난동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온라인을 통한 살인예고 게시글까지 빈번하게 게재되면서 다수의 사람에게 공포심과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
- 이에 최근 형법 개정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였음(공중협박죄, 2025.3.18. 시행)¹⁾.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공중협박죄에 대한 특별규정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공중협박행위를 한 사람을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공중협박행위는 형법상 공중협박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중협박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공중협박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다만 형법상 공중협박죄가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대면 공중협박죄와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중협박죄를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 규정의 운용 상황을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3월 18일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동년 5월까지 공중협박죄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8건으로²⁾, 아직 제도의 효과성이나 보완 필요성을 논의하기 이른 측면이 있어 보임.
- 또한,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중협박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중협박행위와 대면 공중협박행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를 비교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특별형법 규정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현행 형사법상 일반법인 형법의 구성요건으로 제재하기 불충분한 경우에 구성요건을 추가·변경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 가령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사이버 명예훼손죄³⁾는 형법상 명예훼손죄⁴⁾에 정보통신망이라는 매개를 구성요건으로 추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비해 더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가 반복·재생산됨에 따라 개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임.
- 반면 공중협박죄의 경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공중의

2) 세계일보, “[단독] “사람 죽이겠다” “국회 공격”...공중협박죄 도입 두 달 반 동안 18명 검거”, 2025.7.2.

3)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현행 형법이 공중협박죄에 대한 일반근거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처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중의 공포심과 불안감 측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행위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공중협박행위를 달리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형법상 공중협박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을 금지·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입법 효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규정하는 경우 형법과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와 다른 범죄와의 균형성 문제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법상 공중협박죄와의 법적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동일한 목적에서 신설된 형법상 공중협박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따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공중협박행위와의 형평성·비례성 및 다른 범죄와의 균형성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공중협박 정보의 유통금지(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중을 협박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공중협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됨(안 제44조의11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중협박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11(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 ① 이용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중을 협박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검토사항

- 안 제44조의11은 이용자가 공중협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중협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다만, 다음과 같이 현행법에 개정안과 유사한 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등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중협박행위는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중협박 정보는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현행법상으로도 유통금지 및 삭제가 가능하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 정보 유통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해당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에 포함되어 현행 제도 하에서도 방심위 심의를 통해 처리 제한이 가능하므로 개정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의무와 개정안에 따른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보다 일관성 있게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

-
-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